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4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윤준병 · 어기구
이건태 · 김병주 · 정준호
서영교 · 남인순 · 조인철
백선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법원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」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‘이해하기 쉬운 판결문’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.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·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.

이에 장애인이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, 음성, 그림, 영상,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·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6

조 제5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5항 중 “요구할 경우”를 “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, 음성, 그림, 영상,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)	제26조(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)
① ~ ④ (생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<u>요구할 경우</u>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요구할</u> <u>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</u> <u>고려하여 점자, 음성, 그림, 영</u> <u>상,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</u> <u>절한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하</u> <u>며,</u> ----- ----- -----.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